

2001. 5. 25(금)

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산업건설위원회

제천시 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1. 5. 16. 제천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5. 16.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5. 21(제70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 윤종섭)

가. 제안사유

- 현행 조례 내용중 중복되는 규제규정과 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조항을 규제완화와 조례정비차원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제천시 문화의집을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 관리시에 수탁자는 매년 문화의집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.
- 제천시 문화의집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종철)

▣ 법 적 검 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규제 완화적인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 및 법제업무운영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,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규정에 의거 2001. 5. 15 제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.

■ 행정적 검토

- 본 개정 조례안은 중복되는 규제규정과 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2001. 3. 31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완화와 조례정비 차원에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조례제정시 문화의집운영을 문화원을 위주로 해서 지역의 예술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위탁운영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?
(민경환 위원)
- 문화의집 운영시간이 현재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, 많은 학생들이 9~10시까지 확대 운영해 달라고 요구한바 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?
(민경환 위원)
- 가능하시면 연장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다면 위탁운영시에 운영 시간 연장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람. (민경환 위원)

나. 답변요지 (문화관광과장 윤종섭)

- 기본적으로 위탁운영이 원칙이나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이 되면 위탁하는걸 원칙으로 하겠음.
- 운영시간 연장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음.
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해결되면 전체적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고, 1년 내내 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겠음.
- 근무인원 등 문제점이 해결되면 연장하는 쪽으로 신축성있게 운영 하겠음.

5. 소 수 의 견

“ 없 음 ”

6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7. 심 사 결 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. 끝.